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3호 2010년 9월 pp.179~204
한국세무학회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홍범교** · 한상국***

<요 약>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국제조세의 회피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또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간의 조세정보교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OECD에서는 비회원국을 포함한 포럼을 구성하여 조세정보교환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OECD 모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이 중심이 되는 OECD 기준은 전세계적인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최근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에서 발생한 은행정보유출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OECD의 기준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보완수단의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범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를 모든 국가의 과세당국이 실행하는 일은 앞으로 더 진전되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스위스와 같은 은행비밀주의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의 실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효성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여러 나라의 공조가 절실하다 하겠다.

<주제어> 국제조세회피, 조세정보교환, OECD Global Forum, OECD 모델조약 제26조, 국제거래세원통합 분석시스템

* 본 논문은 2010년 7월 6일에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제9회 한중세무학회 학술교류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ong@kipf.re.kr, 02-2186-2226, 제1저자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skhan888@jbnu.ac.kr, 063-270-4707, 교신저자

I. 서 론

세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가능하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내지 않으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대부분 납세자들의 일반적 성향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는 가능하면 세원을 감추려 하고, 또 이를 찾아내는 숨바꼭질 같은 일이 반복되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신용카드 사용 촉진, 현금영수증 제도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로 세원 노출이 많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그 방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세회피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그 속성상 어려운 일이지만, 아직도 과세당국의 해외에서의 징세권, 조사권 등이 매우 제한적이며, 과세당국 간의 협력도 생각보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각국 과세당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특히 OECD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여 왔다. 최근에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특히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은행 사건은 각국 과세당국 간의 협조가 급물살을 타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이제 OECD 모델조세조약 제26조의 정보교환 항목은 자국 정부의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조약국의 과세당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은행비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과거 조세피난처였던 소국들도 최근 OECD의 이러한 기준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논의를 조세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및 대응

1. 국제조세회피의 유형

국제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가 일어나고 있다. 조세회피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들도 연구자에 따라 약간 상이한 분류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大崎 滿(1990), 안중석·최준욱(2003)을 비롯하여 국제

조세를 소개하는 단행본 등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한다.¹⁾

가.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거주지 이전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세율이 높고,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자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 발생지를 불문하고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고세율국 거주자는 국내 법상의 거주지를 저세율국 또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여 소득세나 상속세, 자산과세 등을 회피한다.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에 비하여 거주지 이전이 훨씬 용이한 편이다. 국가에 따라 법인의 본사 주소지를 거주지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 실질적 관리를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이사회가 열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등 다양하기 때문에 국내법상 거주지 판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조세피난처로 이전함으로써 본사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높은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

(2) 투자회사 등 현지자회사의 활용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 방법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무형재산을 포함한 자산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세율국의 기업 A사(모회사)가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자회사(B)를 설립하고 주식이나 사채 등의 자산을 자회사로 이전한다. 모회사인 A사는 명목상 자회사로 이전한 자산을 제3국에 투자하여 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얻는다. B사가 설립된 조세피난처는 국외로부터 얻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므로 이 기업집단은 소득세를 내지 않고 B사에 투자이익을 축적할 수 있다. B사에 축적된 소득은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A사에 이전하든가 또는 자본이득으로 전환하여 A사에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게 된다. 그리고 B사를 청산하면 투자소득이 청산소득으로 변하여 자산양도소득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3) 금융센터 및 역외금융센터의 활용

해외에 금융자회사(금융센터)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고세율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금융허브국가에 금융자회사를 설립한다. 이 자회사가 국제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

1) 이하에서 정리한 세 가지 유형의 분류와 대응 방안은 안종석·최준욱(2003)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달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복수의 금융자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이익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금융자회사에 축적해 두었다가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자금 대여 형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제2차 조세회피를 한다.

한편,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식도 있는데, 대부분의 역외금융센터에서는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자금중개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역외거래에 대해서는 지불준비금, 원천징수과세, 예금금리상한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상의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역외금융센터 가운데 런던과 같은 내외일체형, 뉴욕과 같은 내외분리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조세회피형의 경우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시된다. 조세회피형은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특전으로 이용되어 각국이 명목상 해외자회사 등을 설립하고 실제로 금융거래를 하지는 않더라도 비거주자 거래를 기장하는 기장센터(book-keeping center)로서의 역할을 한다.²⁾

나. 조세조약 남용

조세조약은 두 국가 간에 상호 원천징수세율을 감면하고 특정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조약은 양국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또한 조세조약은 양국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규명하고 각 소득에 대한 과세주체를 분명히 함으로써 어느 쪽에서도 과세하지 않는 이중적인 비과세를 방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 그런데 제3국의 거주자가 자기에게 부여되지 않은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하여 조약의 일방 계약국에 도관회사(conduit company)를 설립하여 부당하게 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treaty shopping이라고 한다. Treaty shopping은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³⁾ 여기서 도관회사를 설립하는 지역은 일반적인 고세율국도 아니고, 통상적인 개념의 조세피난처도 아닌 특수한 성격의 국가나 지역이어야 한다. 고세율국의 경우 도관회사가 획득한 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므로 조세회피가 불가능하며, 조세피난처는 조세조약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 원천지 과세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의 경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조세조약 남용과 조세피난처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세조약의 남용은 국외소득의 원천지 과세를 회피하는 역할을 하고 조세피난처는 투자자 거주지의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2) 내외일체형은 국내시장과 자금교류가 자유롭고 세제면에서도 동등한 취급을 받는다. 내외분리형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 거래는 자유로우나 국내시장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불준비금규제, 원천징수과세 등이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종석·최준욱(2003) 참조

3) Treaty Shopping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안종석·홍범교(2006) 참조

다. 이전가격 조작

기업의 경제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국적기업은 개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절한 지역을 선택함으로써 세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각국의 세율 격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세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단가를 조작하여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환하는 수단이 이전가격 조작이다.

이전가격 조작이 있을 때 저세율국은 이를 통하여 자국의 과세표준인 국내원천소득이 많아지게 되므로 과세당국이 굳이 그것을 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세율국은 자국의 과세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전가격 조작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2.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하여 각각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한, 자국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안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인세를 인하를 통하여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뿐 아니라 국내자본의 국외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부담 인하와 더불어 자국의 제도 정비, 국제적 공조 등을 통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피난처의 활용을 억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제도 정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의 피지배 외국법인(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에 대한 과세제도를 들 수 있다. 피지배 외국법인이란 자국민이 지배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피지배 외국법인의 소득 중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소득이 아닌 것, 즉, 수동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즉시 그것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국조법으로 칭함)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세제를 규정하고 있다.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자회사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⁴⁾ 국제공조를 통한 세무정보 교환도 조세피난처에 대한 유용한 대응수단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Ⅲ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세조약 남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조약 체결국의 거주자 명의를 빌려 조약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은 조세조약 체결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그 밖에

4) 국조법 제17조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원천징수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대책은 이전가격 과세제도이다. OECD의 이전가격지침을 기준으로 여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국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이 있다. 이들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각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표 1>은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 대응방안으로서 공통적인 것은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다.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위해서도 정보교환의 중요성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1〉 국제조세 회피의 유형 및 특징

	조세피난처 활용	조세조약 남용	이전가격 조작
회피대상 소득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회피대상 세목	거주지 과세	원천지 과세	거주지 과세
투자에 주는 영향	거주자의 해외투자 촉진	거주자의 해외투자 촉진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촉진	국내투자 촉진
대응 방안	• CFC 과세제도 • 정보교환 • OECD의 공조노력	•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 • 정보교환 • 원천징수세 강화	• 이전가격 세제

자료 : 안종석 · 최준욱(2003), p.61

III.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당국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OECD는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를 시발점으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과세당국 간의 협조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교환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1.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OECD에서의 논의는 1996년에 G-7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를 구성하여 2년에 걸친 논의와 연구의 결과가 1998년에 발표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Harmful Tax Competition : An Emerging Global Issue)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지역적인 이동이 손쉬운 금융, 서비스, 무형재의 공급과 같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회원국 특혜지역, 조세피난처, 비회원국의 세 분야로 나누어 국제조세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조세피난처를 정의하는 4가지 요소를 지적하였는데, 동 요소는 ① 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명목적인 과세, ②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부재, ③ 투명성의 부족, ④ 실질적 활동의 결여 등이다.

이어서 2000년 발표된 Towards Global Tax Co-operation : Progress i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에서는 1998년 이후 진전에 대한 보고와 함께, OECD 회원국 내에서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47개의 지역을 적시하고 조세피난처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35개 국가(지역) 등을 등재하고 있다.

2000년에 처음 지적된 47개의 유해조세지역은 그 후 46개가 유해성을 해소하고 1929년법에 따른 룩셈부르크 지주회사건(regime)만이 특혜로 남았으나, 이것도 2006년 이후 룩셈부르크의 법적 조치에 의하여 일정 기간을 거쳐 사라질 전망이다.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35개 지역은 2010년 현재 모두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투명성에 동의하고, 이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2002년에는 국제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정보교환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Model Agreement on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를 발표하였다. 동 모델은 OECD 모델 조약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교환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게 되었다.

OECD에서는 동 주제에 대한 Progress Report의 발행을 통하여 실태보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Progress Report는 국제사회에서의 보고를 통하여 OECD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2. OECD Global Forum의 성과

OECD는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케하고, 또한 논의된 결과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2000년에 비회원국을 포함한 Global Forum을 구성하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OECD의 논의는 동 포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Global Forum on Taxation⁵⁾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포럼은 위에서 언급한 Model Agreement on

5) 2009년 9월에 동 포럼은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로 개칭되었다.

Exchan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를 2002년에 작성하였다. 2005년에 모델조약 제26조의 개정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가능성과 신뢰성에 관한 투명성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이후 매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진전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가. 정보교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환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⁶⁾

-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 국내과세 절차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정보원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대국에 대한 정보요청에 선행되어야 한다.
- ② 자동적 정보교환 : 한 계약국에 원천이 있으나 상대방 계약국에서 수취되는 하나 혹은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상대방 국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③ 자발적 정보교환 : 특정조사를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상대방 국가에 전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OECD 모델조약 제26조는 ‘①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해당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단이다. 동 조약의 내용은 2005년도에 본 조항 및 주석서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되었는데, 과거와 차이점은 요청 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상대국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과 은행비밀주의 등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⁷⁾

동 조항 제26조와 2002년의 Model Agreement on Exchnage of Information on Tax Matters를 관통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⁸⁾

- 조약 상대국의 국내세법 집행에 있어 “예측 가능하게 관련(foreseeably relevant)”되는 경우,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에 응해야 한다.
- 은행비밀주의 또는 자국 조세목적상의 필요성이 정보교환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신뢰할 만한 정보의 확보 및 취득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교환된 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동 조항은 민형사상 세금에 대한 정보 요청시,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정보에는 모든 은행과 신탁관련 정보가 포함되지만 정보사냥(fishing expedition)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2009년 3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4개국이 마지막으로 본 조항에 대한 유보를 취소함

6) OECD 모델조약 주석서 §26-9

7) 2005년에 추가된 OECD 모델조약 제26조 4항과 5항의 내용

8) OECD(2010a), p.4

으로써 OECD의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 등 Global Forum에 참여하고 있는 91개국 모두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표준을 실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동 조항은 2008년 10월에 UN 모델조약에도 채택되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② 자동정보교환’의 대표적인 예가 EU의 Savings Directive(2003/48/EC)이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동 지침은 EU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거주지국에 통보하는 것이다.

회원국 이외에도 EC는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스위스와 이자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협정을 맺었다. 이 5개 국가의 지불기관은 EU 거주자인 실질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에 따른 세수는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간에 25 : 75로 분배한다. 2005년 7월부터 처음 3년간은 원천징수세율을 15%로 하고, 그 다음 3년은 20%, 그리고 그 이후에는 35%로 한다. 실질소유자는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불기관으로 하여금, 지불기관이 소재한 국가의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고, 동 과세당국이 소유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허용하면 된다.

나. 최근의 진전

2009년 4월의 보고서에서 상기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규정한 국가(지역)들 간에 300개 이상의 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2009년도에 정보교환을 진전시키는 많은 협정이 체결되었다. OECD(2009)는 정보교환과 관련된 최근의 국제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 2009년 3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4개국이 마지막으로 제26조에 대한 유보를 취소함으로써 OECD 기준은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들 4개국은 다른 나라와의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있는 중인데,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이미 12개 이상의 조약을 개정함으로써 OECD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스위스는 12개 이상의 OECD 회원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
- 2005년 뮌헨 포럼에서 동 조항을 승인하였던 홍콩, 중국, 마카오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 싱가포르는 2009년 2월에 동 기준을 승인하였으며, 6월에 실행 법안을 제출하였다.
- 2008년 이후 Global Forum의 모델에 기반한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이 75개 이상 체결되었다.
- 2000년에 조세피난처로 지목되었던 니우에는 모든 역외부문을 없앴고, 모든 국제사업체, 신탁, 파트너십과 다른 역외 기구를 폐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2002년 OECD에 의하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로 지목되었던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는 OECD 기준을 승인하고, 국내법을 개정하여 정보교환협정을 맺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을 OECD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 브루나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도 OECD 기준을 승인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Global Forum이 조사한 모든 국가가 동 기준을 승인하였다.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2010년 5월까지의 진전을 정리한 것이 <부표 1>이다. 현재 14개국(지역)이 동 기준에 동의하였으나, 상당한 정도로 실행하고(substantially implementing)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Global Forum은 peer review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이러한 기준의 실행에 있어서의 진전을 독려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1단계 검토는 참여국의 법적 규제의 질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실제 운영상태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인데, 모든 참여국에 대하여 2012년 6월까지 1단계 검토를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2단계 검토를 끝낼 예정이다.

한편 양자간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을 통하여 정보교환협정의 실행을 앞당기는 방안이 카리브해 국가들 및 태평양 국가들과 OECD 회원국 간에 추진되고 있다.¹⁰⁾

〈표 2〉 다자협상 파일럿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Southern Caribbean Project	Northern Caribbean Project	Pacific Project
대표협상국	네덜란드	영국	OECD 사무국
참가 회원국	호주, 벨기에, 덴마크(Faroe Islands), 핀란드, 그리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호주(Montserrat), 덴마크(Faroe Islands), 핀란드, 그린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덴마크(Faroe Islands), 핀란드, 그린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한국,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상대 국가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Grenada, St.Kitts and Nevis, St.Lucia, St.Vincent and the Grenadines	Anguilla, Montserrat, Turks and Caicos Islands	Cook Islands, Marshall Islands, Nauru, Samoa, Vanuatu

자료 : OECD, CTPA 홈페이지

- 9) 상당한 정도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12개 OECD 회원국과 정보교환에 대한 조약 또는 협약을 맺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8년 10월에 정해진 동 기준은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개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 10) 2007년 10월 이래 북유럽국가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Guernsey, Isle of Man, Jersey 등과 42개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은 소국들이 여러 나라와 신속하게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할 만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국가들과 일일이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도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을 대표하는 단일 협상팀이 소국 또는 소국 그룹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모두 동일하게 참여국 간에 양자간 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2009년에 3개의 pilot project를 시작하였다(<표 2> 참조).

다.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사건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모든 나라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노력이 최근 들어 급속한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은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금융기관이 관련된 사건이 기여한 바가 크다.¹¹⁾

(1) 사건의 개요

2002년에 리히텐슈타인 LGT(Lichtenstein Global Trust) 은행직원이 1,250명 고객의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6년에 독일은 비밀계좌명단을 수록한 자료(CD 1장)를 420만유로에 취득하여, 탈세자 약 160명을 적발하였다. 이 정보는 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각국 정부들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¹²⁾

이와 유사한 사건이 2008년 스위스를 근거지로 한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에서도 발생하였다. 전직 UBS 자산운용 담당자였던 Bradley Birkenfeld는 UBS가 약 200억달러 상당의 비실명계좌를 약 2만명의 미국 납세자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UBS 직원들이 미국 고객들이 자산을 은닉할 수 있도록 역외 명목회사를 설립해 주고 이 역외회사가 자산을 소유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제보하였다.

(2) 진행 과정 및 결과

미국은 LGT 사건으로 인해, 2008년 12월 8일 리히텐슈타인 정부와 과세 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하였다. 협약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은 향후 미국에 미국 세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은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모든 형태의 연방세에 관련된 정보를 리히텐슈타인에 요청할 수 있다.¹³⁾ 요청받은 나라가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심지어 요청받은 정보가 비거주자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요청은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교환된 과세정보는 오

11) US Senate(2008) 참조

12) <http://www.guardian.co.uk/business/2008/mar/02/tax.personalfinancenews>

13) 종전까지 미국과 리히텐슈타인은 상호 사법공조조약(Mutual Legal Assistance Treaty)에 근거하여 조세포탈 형사사건에 관련된 정보만을 교환하고 있었다.

로지 특정한 과세당국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오로지 과세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스위스의 UBS 사건의 경우, 플로리다의 연방 판사는 2008년 7월 1일 UBS에 대하여 스위스 계좌를 이용, 미국 세금을 포탈한 미국 고객들에 관한 계좌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해 달라는 미국 법무성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나아가 미국 법무성은 2008년 11월 12일, UBS의 국제자산관리 부문 CEO인 Raoul Weil을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은행 업무를 관리·감독하면서 미국 국세청의 눈을 피해 매년 약 200억달러 규모의 미국 납세자의 자산을 은닉하고 그 대가로 UBS로 하여금 매년 약 2억달러의 수입을 얻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미국 법무성은 UBS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1만 9,000여명의 미국인들에 대하여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세청도 미국 납세자들에게 1만달러 이상의 비실명계좌를 신고하고 탈루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법상 세무조사나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납세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LGT 사건과 UBS 사건은 2008년 7월 17일 미국 상원 국가안보위원회로 하여금 ‘조세피난처 은행과 미국시민의 납세순응(tax haven banks and US tax compliance)’¹⁴⁾이라는 청문회를 열게 만들었다. UBS의 국제 자산관리부분 CFO인 Mark Branson은 위 청문회에 출석하여 Birkenfeld의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시인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스위스 정부가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국내법상 조세회피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자국 내 은행비밀보호법은 은행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외국의 과세당국을 포함하여)에게 제공하는 것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위스 정부는 위 청문회 후에도 자국의 은행제도 안에서 발생한 미국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UBS가 고객들의 정보를 미국에게 넘겨준다면 이는 스위스 국내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은 2009년 스위스 UBS를 상대로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자국민 5만 2천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UBS는 스위스의 ‘은행비밀보호법’¹⁵⁾ 위반이라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소송이 본격화되자 UBS는 250명의 고객정보만 공개하고 대신 벌금으로 7억 8천만 달러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세 수위를 높였으며 결국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다. 스위스 UBS에 예치된 자국민 위탁자금 규모를 148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미국은 OECD에 스위스를 버진 아일랜드·버뮤다 등과 함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을 검토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14) http://hsgac.senate.gov/public/_files/071708PSIRReport.pdf

15) 현 스위스법은 명백한 범죄 목적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만 고객계좌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스위스는 정부 차원의 행정협조를 통한 정보 제공에 합의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에 예금을 갖고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 제공에 대한 논의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 2009년 8월 19일 미국과 스위스는, 스위스의 법률과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에 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하였다. 위 합의사항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미국과 스위스 정부 사이에 기 체결된 미국-스위스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 제26조에 따라 스위스 국세청에 행정협조를 구하여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UBS 은행에 있는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라. 각국 조세조약 개정의 움직임

2009년을 기점으로 OECD의 Global Forum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델 조약 제26조를 중심으로 한 기준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물론 <부표 1>에서 보듯이 동 기준을 채택하기로 동의한 것이 실천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들 국가들이 맺고 있는 조세조약에 새로운 기준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26조에 새로 추가된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국내법적으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조약의 개정이 없이도 OECD의 기준을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조약 당사국들이 이미 자국의 조세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보교환에 응한다는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특별히 조약을 개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¹⁶⁾

거주지국 과세를 통하여 자국민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제26조를 포함한 새로운 미국의 모델조약(US Model Tax Convention)을 2006년 11월에 발표하여 다른 나라와의 조약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UBS 사건의 여파로 스위스는 미국과의 정보교환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스위스의 법률과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와 같은 조건은 앞으로 양국 간의 정보 교환에 있어서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전통적으로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하던 스위스, 룩셈부르크와 같은 나라와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조약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가들도 원칙에는 동의하였으나 다양한 제약을 통하여 실천의 범위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많은 소규모 국가(지역)들도 OECD의 기준에 따르기로 동의하였으나, 이들 지역과의 협상을 거쳐 정보교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본다.

16) 우리나라는 국조법에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3. 자발적 신고와 사면정책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OECD를 통한 국제적 공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납세자의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가. 역외소득의 신고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세수가 증가하고 징세비용은 감소하며 조세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000년 OECD Bank Report¹⁷⁾는 해외 소득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면정책을 취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다. 2003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국가의 자발적 신고 유도는 조세사면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아일랜드와 미국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고 벌칙을 감면해 주는 대신 직접적인 세금감면은 없었다. 사면의 경우 나라마다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 전체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적용세율도 나라마다 달랐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소통에 있는데, 사면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순응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본세탁방지법과 같은 비조세법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OECD(2010b)에서는 역외소득신고제도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우선 역외소득의 신고제도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단기 세수의 증대 및 장기적인 납세순응 증진과 해외에 축적된 자산의 본국 송금 유도 등이 대표적인 목적인데, 동 정책이 목표로 하는 특정 납세자 집단과 전체 납세자들에게 정책의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사면제도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또한 자발적 신고에 따른 혜택과 비신고에 따른 벌칙을 납세자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동 제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확실하게 증가한다는 것과 이 제도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감춰둔 소득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확실한 혜택이 있다는 것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납세순응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어야 이러한 완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납세순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 주요국의 사례

조세사면에 의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면까지 부여하지는 않으면서 일부 유인을 제공하여 납세자들의 역외소득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주요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17)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1) 조세사면

벨기에의 2004년 조세사면은 본국으로 가져온 자금에 대하여 그 자금이 재투자되는 경우 9% 또는 6%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동 사면조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거두어들인 세수는 약 5억유로에 달한다. 이것은 EU savings directive가 발효되기 직전이라는 점과 2005년말에 통과된 법이 2008년부터 소지형(bearer) 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독일은 2004년 1월에 조세사면법을 발효하여 2005년 3월말까지 신고기간을 부여하였다. 1993~2002년의 기간 동안 과세당국이 모르는 해외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를 신고하면 25%의 세금 부과로 마무리짓는 구조이다. 동 사면으로 거두어들인 세수는 약 9억유로로서 처음에 예상했던 50억유로에는 크게 못 미치는 규모이다.

그리스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해외자산에 대하여 조세사면을 실시하였다. 국내송금시 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반드시 그리스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탈리아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해외에 있는 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조세사면을 실시하여 약 21억유로에 상당하는 세수를 거두어들였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다시 조세사면을 실시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5년 1월에 조세사면을 실시하여 2006년 2월까지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도록 유도하였다. 특정 조건하에 국내로 송금된 액수의 25%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벌칙은 부과하지 않았다.

포르투갈은 2005년에 조세사면을 실시하여 2004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증권 기타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금액의 5%만을 세금으로 부과하였고, 공채에 재투자되는 경우에는 2.5%만을 세금으로 부과하였다. 동 사면조치로 거두어들인 조세는 4,100만유로에 그쳤다.

(2) 비조세사면

아일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는 조세사면을 시행하지 않고 자발적인 역외소득의 신고를 유도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조세사면은 아니지만, 역시 상당한 유인을 제공하였다.

먼저 아일랜드는 2004년 3월에 역외계좌 소지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2003년 12월에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금융회사 대표들을 소집하여 광범위한 조사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금융회사 대표들은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고 자발적인 협조의 혜택에 대하여 공지하였다. 2004년 6월 10일을 마감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조사영장 등을 통하여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세금의 감면은 없었고, 미납세금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납부하여야 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진 신고할 경우 벌칙을 경감하여 주고, 형사상의 소추는 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2006년 5월 특별조사관(Special Commissioner)¹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이 조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역외소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7년 4월에 역외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역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미납세금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미 기소 중이거나 조사 중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미납세금은 이자 및 10%의 가산세와 함께 2007년 11월 26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인 벌칙성 가산세(최고 100%)보다는 낮은 벌칙을 유인으로 제 공하였다.

〈표 3〉 조세사면 프로그램으로 인한 추가 세수

국 가	자발신고프로그램	노출 자산금액/세수		추정 여부
		자국 화폐단위 기준	유로 기준 ¹⁾	
호주	2007 and Onwards Tax Amnesty – Project Wickenby	세수 및 벌금 3억 이상 호주 달러	2억 5백만 이상	실제액
벨기에	2004 Tax Amnesty	세수 4억 9,600만유로		추정액
캐나다 ²⁾	Voluntary Disclosures 2004~2005	세수 3억 1,800만캐나다달러 (6,632건)	2억 3,300만	실제액
독일	2004 Tax Amnesty	세수 9억 100만유로		실제액
그리스	2004 Tax Amnesty	노출자산 200억유로		추정액
아일랜드 ²⁾	2004 Voluntary Disclosure of Offshore Accounts	세수 8억 5,600만유로 (15,000명)		실제액
이탈리아	2002~2003 Tax Shield	세수 21억유로		실제액
	2009~2010 Tax Shield	2009년 12월 15일 현재 노출자산 950억유로 세수 47억 5천만유로		실제액
포르투갈	2005 Tax Amnesty	세수 4,100만유로		실제액
남아공	2003 Tax Amnesty	노출자산 650억랜드 세수 4억랜드	66억 4,100만	실제액 추정액
영국 ²⁾	2007 Voluntary Disclosure Facility	세수 4억파운드	4억 4,700만	실제액
미국 ²⁾	2003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	세수 및 벌금 2억 7,000만달러 (1,300명)	2억 200만	실제액

주1) 2010년 3월 24일 환율 기준

주2) 회색으로 표시한 국가는 비조세사면 국가

자료 : OECD(2010b), p.31

18) 우리나라의 조세심판원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2003년 1월 14일에 국세청이 자발신고제도(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를 도입하여 미납세금과 이자, 벌칙성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2003년 4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신고에 응한 시민에게는 민사상의 사기 또는 미신고에 따른 벌칙을 면제해 주었다.

캐나다의 신고제도는 벌칙이나 기소 없이 납세신고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허용되었다. 미납세금과 이자는 지불하여야 하나, 벌칙금이나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2004~2005년간 6,632건에 3억 1,800만캐나다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두었다. 1992~1993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286건에 1,190만캐나다달러의 추가세수를 거둔바 있다.

IV. 우리나라의 국제조세회피 방지 노력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에 국조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법률은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제도,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 국가 사이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국조법이 제정된 이후의 국제거래 환경 및 국제과세규범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노력을 국제조세회피의 방지와 관련되는 정보교환 및 여타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그리고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금융정보 교환의 확대¹⁹⁾

우리나라는 2002년 12월에 과거에 형식적으로 마련되었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항을 실질적으로 보완하였다.²⁰⁾ 이에 따라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관련 정보를 계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를 요청하면 상호주의 원칙하에 금융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2010년 1월에는 동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 교환 대상에 비거주자·외국법인 외에 거주자·내국법인을 추가하였다. 이는 OECD 등의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정보 교환 대상을 확대하여 역외탈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조법 제31조에 따라 제공되는 조세관련 정보는 ㉠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불복에 대한 심리, 형사소추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

19) 김준석·한인철(2010) 참조

20) 국조법 제31조

한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정보는 ㉠ 세법에 의해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증여재산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채약상대국의 당국이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채약상대국 채납자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 ㉤ 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필요한 정보인 경우에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장은 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내역 등을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²¹⁾ 다만 당해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그 밖에 비밀유지조항을 두어 권한 있는 당국 외에는 그러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²⁾ 현재 우리나라는 80여개국과 정보교환조항을 포함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²³⁾ Cook Islands, Samoa, Bahamas, Cayman Islands 등 8개 지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2.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여타 제도 개선²⁴⁾

가.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 명시

2006년에 실질과세원칙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적용됨을 천명함으로써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의 투명성을 높였다.²⁵⁾ 이에 따라 첫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며, 둘째,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셋째,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21) 국조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22) 국조법 제31조 제3항~제5항, 제31조의2

23) 스위스와 조세조약에는 현재 정보교환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국가와는 서명 후 발효 전 또는 가서명 상태이다.

24)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및 김인근(2010) 참조

25) 국조법 제2조의2

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나. 이전가격세제 강화 및 미비점 개선

이전가격세제의 강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2년에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²⁶⁾ 즉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국외지배주주와의 사이에 부당한 국제거래에 의하여 국내의 과세소득을 국외로 이전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도 이전가격세제 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²⁷⁾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법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하여 개정된 OECD 이전가격과세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한 것이다. 이전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적용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외국계법인 등이 국내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무형자산을 개발·확보하기로 하고 비용·원가를 분담하는 경우 원가분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전가격의 과세조정에 의하여 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전한 소득이 국내법인에 반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였다.

2008년에는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의 특례를 보완하였다.²⁸⁾ 납세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및 미비점 보완

2006년에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²⁹⁾ 내국주주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직·간접 또는 가족을 통하여 20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도록 확대하되, 해외자회사의 실제발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조세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인 경우에도 자회

26)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27) 국조법 제2조, 제6조 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 개정, 법 제6조의2 신설

28) 국조법 제13조

29) 국조법 제17조 제2항 개정, 동조 제3항, 제18조 제4항 및 제18조의2 신설, 제19조 및 제20조 개정

사의 주식 등을 6월 이상 보유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 배당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계산시 공제하도록 하고, 간주 배당금액으로 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실제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에는 해외지주회사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을 완화하였다.³⁰⁾ 해외지주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합계가 해당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또한 2008년 12월에 도매업의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배제요건도 완화하였다.³¹⁾ 도매업을 영위하는 해외진출 법인이 같은 지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더라도 조세피난처세제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조세피난처 적용대상 판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³²⁾ 즉 과세당국은 OECD가 지정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를 고려하여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었으나, OECD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가 모두 해제되어 제도 운영의 실익이 없어졌다. 이에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판정기준 중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삭제하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지역으로 일원화하였다. 이렇게 판정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과소자본세제 관련 규정 강화

과소자본과세제도는 내국법인이 모기업인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직접 차입하거나 그의 지급보증하에 차입하는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포함시키고, 국외지배주주가 담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증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³³⁾

30) 국조법 제18조의2 제2호

31) 국조법 제18조 제4항

32) 국조법 제17조 제1항

33) 2002년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14조 제1항

3.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은 국제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을 구축하여 2010년부터 가동하고 있다.³⁴⁾ 종전에는 기업의 재무분석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업종별 표준재무제표나 결산서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건별로 조회하였다. 또한 국외기업 재무정보 등은 조세 피난처의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주로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활용 가능하였다. 그러나 ICAS에서는 세무신고자료, 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하여 전산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ICAS에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 2만개의 모든 재무자료 일체와 우리나라 투자기업을 포함한 5,700만개의 국외기업 재무자료 일체 등이 수록되어 있다.³⁵⁾ 동 시스템에서 지역, 회사명, 주주, 업종 등의 조건으로 국외기업 검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현황 등 해당 기업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국제거래 관련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 등을 상호연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국제거래 분석·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 모기업이 국가 간 정보자료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한 후, 해외 현지법인을 청산할 때 국내 모기업에 지분투자 처분손실을 계상하였으나, ICAS 확인 결과 신고사실과 달리 현지법인은 흑자 청산한 것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지분 및 대부투자 해외송금을 하고 세무신고하였으나, ICAS 국외기업 DB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송금액이 해외 현지법인에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조세정보 교환 등으로 역외 세원정보 수집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ICAS DB 보강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는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 향후 과제 및 결론

OECD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을 위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0년 6월의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도 OECD의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³⁶⁾ 군소 국가(지역)를 포함한 Global Forum의 전 참가국이 OECD

34) 국세청 보도자료(2010) 참조

35) 외국자료의 경우 상용 DB도 이용한다.

36) 부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성명서, 2010. 6. 5

의 기준을 승인한 것은 총체적인 면에서 성과라고 하겠지만, 아직 실질적인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행하는(substantially implementing) 국가들의 경우에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김유찬(2010)은 스위스가 12개 이상의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을 맺어 OECD의 기준을 상당히 실행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정보교환협정의 내용은 나라에 따라 상이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와의 조약의 경우에는 탈세혐의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스위스 내 관리인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여야 스위스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프랑스와의 조약에서는 프랑스가 이러한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이를 제시할 수 있으나 동 자료가 없어도 스위스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스위스와 정보교환에 관한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시키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덴마크식의 결론을,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결론을 선호하고 있으나, 최종 결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스위스뿐 아니라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들도 국제적인 압력에 의하여 OECD의 기준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금융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실제 조약 등을 통한 적용에 있어서는 가능한 그들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할 것이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이 조약체결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정보교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OECD의 정보교환기준의 의도를 훼손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은 체결당사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개입 또는 다자간 협상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 과거 은행비밀주의를 고수하던 국가들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Global Forum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납세자에 의한 역외계좌신고제도도 그러한 방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역외계좌신고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단순히 신고에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의 내용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세당국 간의 정보교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제도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의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적 정보교환이 아니라 제3자를 거치는 또 하나의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다.³⁷⁾ QI제도는 거주지국의 과세당국이 역외금융기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정보를 가지고 있

37) 홍범교 외(2009) 참조

는 제3자가 역외금융기관이고 이들이 국가에 따라 은행비밀법에 직면한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최근 국제적인 은행비밀주의의 약화와 함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QI는 Know-Your-Customer 절차에 따라 계좌의 소유주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집합정보(pooled information)만을 전달함으로써 개별 고객의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즉 QI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과세당국이 QI의 원시 정보에 직접 접근하지는 못하게 된다. QI 제도는 거주지국 과세당국을 대신하여 제3자가 원천징수를 해주는 대신, 과세당국은 개별 납세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제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의 직접 정보교환, 납세자 신고를 통한 정보접근, QI와 같은 제3자를 통한 정보획득 등의 방식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교환에 있어서는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나 Leeds Castle Group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공조 노력도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의체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Egmont Group 등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도 주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02, 2006, 2007, 2010.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보도자료. 2010. 1. 14.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구축·가동」.
- 김인근. 2010.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텍스.
- 김유찬. 2010. 3. “불법취득 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재정포럼 제165호 : 62 - 72.
- 김준석·한인철. 2010. 「국제조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 안중석·최준욱. 2003. 「국제조세회피의 행태 및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 안중석·홍범교. 2006.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홍범교·구자은·마정화. 2009.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연구제도 개선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 大崎 満. 1990. 「國際的租稅回避」, 日本 大藏省.
- OECD. 2007. *Improving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 The 2007 Progress Report*.
- OECD. 2009. *Tax Co-operation 2009 : Towards a Level Playing Field*.
- OECD. 2010a. *Promoting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 A Background Information Brief*, May 19.
- OECD. 2010b. *OECD's Current Tax Agenda*.
- US Senate. 2008. *Tax Haven Banks and US Tax Compliance*, 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Staff Report, July 17.

〈부표 1〉 OECD 기준을 따르는 국가(2010년 5월 19일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따르는 국가(지역)					
안도라	체코	일본	세인트 루시아		
앵귈라	덴마크	저지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한국	사모아		
아르헨티나	에스토니아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루바	핀란드	룩셈부르크	세이셸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독일	몰타	슬로바키아		
바하마	지브롤터	모리셔스	슬로베니아		
바레인	그리스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모나코	스페인		
벨기에	건지	네덜란드	스웨덴		
버뮤다	헝가리	네덜란드령 안틸리스 제도	스위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케이맨제도	아일랜드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칠레	맨섬	포르투갈	영국		
중국 ¹⁾	이스라엘	러시아	미국		
키프로스	이탈리아	세인트 키츠 네비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국제적으로 합의된 과세 기준을 따르기로 하였으나, 아직 실천이 완전치 못한 국가(지역)					
국가(지역)	합의 연도	체결 조약 수	국가(지역)	합의 연도	체결 조약 수
조세피난처(Tax Havens)					
브라질	2002	(4)	나우루	2003	(0)
쿡제도	2002	(11)	니우에	2002	(0)
라이베리아	2007	(0)	파나마	2002	(1)
마셜	2007	(2)	바누아투	2003	(2)
몬트세라트	2002	(3)			
기타 금융 센터					
브루나이	2009	(9)	필리핀	2009	(0)
코스타리카	2009	(1)	우루과이	2009	(5)
과테말라	2009	(0)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따르지 않기로 한 국가(지역)					
국가(지역)	체결 조약 수		국가(지역)	체결 조약 수	
Global Forum에 의해 조사된 모든 국가는 동 기준을 따르기로 함					

주1) 일부 특수행정구역은 과세기준을 따르기로 하되, 아직 실천이 완전치 못함

자료 : OECD(2010), p.16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ax Evasion and Corresponding Actions of Korean Government

Hong, Beom Gyo* · Han, Sang Kook**

—〈Abstract〉—

As the number of global transactions increases, the amount of international money flows also increases accordingly. Though it is not possible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evaded tax, it is believed that the amount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OECD and tax authorities of many countries are concerned about this problem and have discussed on ways to prevent tax evasions for many years.

Especially OECD Global Forum, international dialogues between OECD member countries and non-member countries, has led the discussions in a way to coordinate various actions taken by different jurisdictions to suppress non-compliance behaviors for tax purposes. Many former tax haven countries have pledged to reform their tax systems or already implemented new tax systems equipped for higher transparency.

Exchange of tax information between tax authorities is a very important tool in preventing tax evasion. OECD's recent works were focusing on this area and as a result, Article 26 of Model Tax Convention has been revised. The updated version of Article 26 makes the treaty partners cooperate to each other even in a case where such cooperation would not meet their own taxing interest. Furthermore, they cannot refuse a request for information simply because of the bank secrecy laws, etc.

Korean government is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prevent tax evasion. Korea has tax treaties or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with more than 80 countries. Additionally, Korean tax authority has set up a data base called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that is very useful to monitor the capital flow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lthough many countries, especially the former tax havens and the countries with bank secrecy laws, have pledged to satisfy OECD's transparency requirements,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a greater extent. Coordinated global pressure is expected to bring these countries on the level-playing field in real terms.

〈Key words〉 International Tax Evasion, Article 26 of Model Tax Convention,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 OECD Global Forum, International Consolidated Analysis System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hong@kipf.re.kr

**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khan888@jbnu.ac.kr